

#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중 개정규정 요지

## 1. 개정이유

- 정원외인력정수 관리근거의 변경 및 책정절차의 강화, 사업다각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수 조정 등을 위해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원외인력정수 관리 근거 변경(제1조)
  - 직제규정 제15조 → 정관 제22조제2항
- 정원외인력 적용대상의 개정 (제2조)

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이 유
임대주택 관리직원 및 주거복지상담사	임대주택관리직원	주거복지상담사를 임대주택관리 직원의 '사무원'에 포함
사무전문가	사무관리원	사무 등 업무지원 → 특정사무(비서, 홍보)로 한정
	사무기술전문가	일시적 사업 확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무기술분야 전문인력으로 재정립

※ 2015년 노사합의(2015.12.24)에 따라 주거복지상담사를 임대주택 관리직원에 포함

- 용어의 정의 확대 (제3조)
  - 정원외인력의 '사용부서', '정수관리부서', '한시정수'의 용어 추가
- 새로운 정원외인력 요청기준 정립 (제4조)
  - 요청요건을 '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'으로 한정, 요청기한 폐지
-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심사 강화 (제5조)
  - 승인권자 변경 (정수관리부서 → 이사회 의결)
  - 승인권자 변경에 따른 제절차 생략
    - ① 정원관리부서의 인사·사용·예산부서에 대한 정원외인력정수 책정결과 통보 폐지
    - ② 예산부서의 정수관리·인사·사용부서에 대한 예산확보 결과 통보 폐지
  - 사용부서의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의무 부여(제5조제3항)

- 주거복지본부의 정원외인력정수 관리임무 삭제(경영관리부에서 관리)  
(제6조제3호)
- 정수관리(제8조)
  - 정원외인력정수 책정 승인권의 이사회 이관에 따라 정수관리부서의  
‘정수책정 승인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’ 의무 삭제
- 정수 조정(별표1)
  - 신규 수요 인력 : 속기사, 주거복지, 유통, 식물관리
  - 분야별 정수조정
  - 사무전문가의 재분류 및 정수 조정
  - 사무기술전문가의 정수 조정
  - 임대주택관리직원의 8급급 이하 정수 통합
- 한시정수의 운영기간 변경(부칙)
  - 2년 미만 →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제안근거

- 사장방침 제201호 「직제규정 및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」(2016.3.15)

#### 나. 예산조치 : 조치

#### 다. 절 차 :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
#### 라. 기타참고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 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에스에이치(SH)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직제규정 제15조에 의거 정원외인력(이하 “정원외인력”이라 한다) 정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 조(목적) 이 규정은 <u>에스에이치(SH)공사정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원외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임대주택 관리분야에 필요한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(임대주택관리직원 및 주거복지상담사)</u></li> <li>2. <u>주택공급 및 수납 등 고객지원에 필요한 상담원</u></li> <li>3. <u>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원</u></li> <li>4. <u>사무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무전문가</u></li> <li>5. <u>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력</u></li> </ol>	<p>제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원외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주택관리직원</u></li> <li>2. <u>주택공급 및 수납 등 고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지원상담원</u></li> <li>3. <u>건물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건물유지관리원</u></li> <li>4. <u>특정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원</u></li> <li>5. <u>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무·기술분야전문인력(이하 ‘사무기술전문가’라 한다.)</u></li> </ol>
<p>제3 조(정원외인력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“정원외인력”이라 함은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1년 이상 사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</p>	<p>제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“정원외인력”이라 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사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</li> <li>② “사용부서”라 함은 정원외인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부서를 말한다.</li> <li>③ “정수관리부서”라 함은 정원외인력의 정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</li> <li>④ “한시정수”라 함은 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한 인력으로서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인력을 말한다.</li> </ol>

현 행	개 정
<p>제 4 조(정수채정요구) <u>사용부서가 새로운정원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정원외인력사용계획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외인력채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정수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 4 조(<u>정수채정의</u> 요구) ①<u>사용부서는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정원외인력에 한하여 새로운 정수채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②<u>제1항에 따라 정수채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외인력채정요청서를 정수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 5 조(정수채정승인) ①<u>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원외인력사용계획서 및 정원외인력 정수채정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채용목적·인원·기간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정원외인력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부서, 사용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한다.</u> ②<u>예산부서는 정원외인력정수 책정승인서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수관리부서,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.</u>  ③<u>정수채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경우 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추가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사용부서는 성실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 5 조(<u>정수채정</u>) ①<u>정원외인력의 정수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책정한다. 다만, 사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무기술전문가내 분야별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.</u>  ②<u>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원외인력 정수채정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채용목적·인원·기간 등의 적정여부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</u> ③<u>사용부서는 정수관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수채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 6 조(부서별 임무) <u>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조직담당 부서는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업무를 담당한다.</u> 2. <u>인사담당 부서는 정원외인력의 채용·보수·퇴직관리 등 인사관리업무를 담당한다.</u> 3. <u>정원외인력의 실제 사용부서는 정원외인력의 정수채정요청 및 사용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정원외인력에 대하여는 주거복지본부에서 담당한다.</u></p>	<p>제 6 조(부서별 임무) <u>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/u> 1. <u>정수관리부서 :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</u> 2. <u>인사부서 : 정원외인력의 채용·보수·퇴직관리 등 인사관리</u> 3. <u>사용부서 : 정원외인력의 정수채정요청 및 사용 관리</u></p>

현 행	개 정
제7조(정수의 총수) 공사의 정원외인력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.	제7조(정수의 총수) <u>에스에이치(SH)공사</u> 의 정원외인력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. ※ <u>별표1 ⇒ 별첨</u>
<p>제8조(정수관리) 정수관리부서는 <u>정원외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정원외인력의 정수채정 승인시 사용부서 정원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.</u></li> <li>2. <u>정원외인력의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삭감한다.</u></li> <li>3. <u>인력진단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삭감한다.</u></li> <li>4. <u>채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정원외인력의 정수는 삭감한다.</u></li> </ol>	<p>제8조(정수관리) 정수관리부서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외인력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정원외인력의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</u></li> <li>2. <u>인력진단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때</u></li> <li>3. <u>채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li> </ol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한시정수) 제7조 관련 별표1의 사무기술전문가 중 한시정수 16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해당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2. 정원외인력정수의 조정 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수를 폐지한 경우</li> <li>3. 경영상의 이유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정수를 폐지한 경우</li> </ol>



###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 정원표

부서명	합계	직급별 계						임대주택관리직원																			주거복지 상담사	
								사무원						기술원						복수직								
		7급갑	7급을	8급갑	8급을	9급갑~ 9급을	계약 직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	8급을	9급갑~ 9급을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	8급을	9급갑~ 9급을	소계	7급 갑	7급 을	8급 갑	8급 을	9급갑~ 9급을	계약 직	소계	9급갑~ 9급을
합계	371	10	16	18	53	267	7	178	10	16	9	33	110	71	0	0	9	11	51	107	0	0	0	9	91	7	15	15
강남권역 주거복지센터	32	1	2	2	5	21	1	20	1	2	1	3	13	7	0	0	1	1	5	5	0	0	0	1	3	1		
송파권역 주거복지센터	26	1	1	1	5	18	0	14	1	1	1	3	8	5	0	0	0	1	4	7	0	0	0	1	6	0		
강서권역 주거복지센터	41	1	2	2	5	31	0	22	1	2	1	3	15	8	0	0	1	1	6	11	0	0	0	1	10	0		
관악권역 주거복지센터	25	1	1	1	4	17	1	12	1	1	0	3	7	6	0	0	1	1	4	7	0	0	0	0	6	1		
노원권역 주거복지센터	48	1	2	2	5	37	1	23	1	2	1	3	16	9	0	0	1	1	7	16	0	0	0	1	14	1		
동대문권역 주거복지센터	30	1	1	1	4	22	1	15	1	1	0	3	10	6	0	0	1	1	4	9	0	0	0	0	8	1		
성동권역 주거복지센터	24	1	1	1	5	14	2	13	1	1	1	3	7	6	0	0	0	1	5	5	0	0	0	1	2	2		
마포권역 주거복지센터	24	1	2	2	5	14	0	12	1	2	1	3	5	6	0	0	1	1	4	6	0	0	0	1	5	0		
은평권역 주거복지센터	31	0	2	2	5	22	0	13	0	2	1	3	7	5	0	0	1	1	3	13	0	0	0	1	12	0		
성북권역 주거복지센터	31	1	1	2	5	21	1	11	1	1	1	3	5	5	0	0	1	1	3	15	0	0	0	1	13	1		
양천권역 주거복지센터	44	1	1	2	5	35	0	23	1	1	1	3	17	8	0	0	1	1	6	13	0	0	0	1	12	0		
주거복지센터	15	0	0	0	0	15	0	해당 없음																		15	15	

<개 정>

<별표1(제7조 관련)>

## 정 원 외 인 력 의 정 수 표

### 1. 총정원의 인력 정수

계	임대주택관리직원				고객지원 상 담 원	건물유지 관 리 원	사 무 관 리 원	사무기술 전 문 가
	소 계	사무원	기술원	복수직				
414	371	193	71	107	11	9	3	20

※ 사무관리원(특정사무 지원) 3명 : 비서 1명, 홍보 2명

### 2. 본부 정원의 인력 정수

부 서 명	계	임대주택 관리직원	고객지원 상 담 원	건물유지 관 리 원	사무관리원	사무기술 전 문 가
계	414	371	11	9	3	20
기획경영본부	21			9	3	9
주거복지본부	378	371	6			1
도시재생본부	2					2
공공개발사업본부	10		5			5
택지사업본부	1					1
건설안전사업본부	2					2
SH도시연구원						
SH교육원						
감 사						

### 3. 사무기술전문가 정수

계	속기사	재정 관리	공 공 디벨로퍼	홍보	해외 사업	주거 복지	시유지 관 리	마케팅	유통	식물	설계	에너지
20	1	1	3	1	4	1	2	3	1	1	1	1

※ 한시정수(16명) : 속기사(1), 재정관리(1), 공공디벨로퍼(2), 홍보(1), 해외사업(4), 주거복지(1), 시유지관리(2), 유통(1), 식물(1), 설계(1), 에너지(1)

#### 4. 임대주택관리직원 정수

부서명	합계	계				사무원				기술원				복수직				
	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계약직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계약직
합계	371	10	16	338	7	193	10	16	167	71	0	0	71	107	0	0	100	7
강남 주거복지센터	35	1	2	31	1	23	1	2	20	7	0	0	7	5	0	0	4	1
송파 주거복지센터	26	1	1	24	0	14	1	1	12	5	0	0	5	7	0	0	7	0
강서 주거복지센터	41	1	2	38	0	22	1	2	19	8	0	0	8	11	0	0	11	0
관악 주거복지센터	29	1	1	26	1	16	1	1	14	6	0	0	6	7	0	0	6	1
노원 주거복지센터	48	1	2	44	1	23	1	2	20	9	0	0	9	16	0	0	15	1
동대문 주거복지센터	31	1	1	28	1	16	1	1	14	6	0	0	6	9	0	0	8	1
성동 주거복지센터	24	1	1	20	2	13	1	1	11	6	0	0	6	5	0	0	3	2
마포 주거복지센터	24	1	2	21	0	12	1	2	9	6	0	0	6	6	0	0	6	0
은평 주거복지센터	35	0	2	33	0	17	0	2	15	5	0	0	5	13	0	0	13	0
성북 주거복지센터	31	1	1	28	1	11	1	1	9	5	0	0	5	15	0	0	14	1
양천 주거복지센터	47	1	1	45	0	26	1	1	24	8	0	0	8	13	0	0	13	0



<개 정>

<별지 제1호 서식(제4조 관련)>

### 정원외인력정수책정요청서

업무분야					
채용목적 (구체적으로 기재)					
요구인원					
업무량	업무명	업무처리량 (회·건/월)	건(회)당 평균(소요)시간	총소요시간 (시간/월)	비고
사용기간					
소요예산	구분	예산과목	소요액 (천 원)	산출기초	
재원			예산부서 협의	예산부서장 (인)	
향후계획					
<p>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원외인력의 정수책정을 요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○○본부장 (인)</p> <p><u>첨부 : 정원외인력사용계획서(* 본부장 이상 방침)</u></p> <p>SH공사사장 귀하</p>					

<현 행>

<별지 제2호 서식(제5조 관련)>

정 원 외 인 력 정 수 책 정 승 인 서		
분 야 별		
채용목적		
인 원	요구인원	
	승인인원	
사용기간		
승인조건		
기타사항		
<p>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원외인력의 정수책정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SH공사사장 (인)</p>		

<개 정>

<별지 제2호 서식(제5조 관련)> <삭 제>

<현 행>

<별지 제3호 서식(제5조 관련)>

정 원 외 인 력 정 수 불 승 인 통 보 서			
○○○○본부(실,소,처)에서 제출한 정원외인력의 정수책정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승인 되었기에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통보합니다.			
요구일자	건 명	정수책정요구내용	불 승 인 사 유
		요청인원 :     명 사용기간 : 기     타 :	
년    월    일			
SH공사사장   (인)			

<개 정>

<별지 제3호 서식(제5조 관련)> <삭 제>

##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

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1조의 “에스에이치(SH)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직제규정 제15조에 의거 정원외인력(이하 “정원외인력”이라 한다) 정수관리에 관한”을 “에스에이치(SH)공사정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에”로 한다.

○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원외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대주택관리직원
2. 주택공급 및 수납 등 고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지원상담원
3. 건물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건물유지관리원
4. 특정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원
5. 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무·기술분야전문인력(이하 ‘사무기술전문가’라 한다.)

○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정원외인력”이라 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사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② “사용부서”라 함은 정원외인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부서를 말한다.
- ③ “정수관리부서”라 함은 정원외인력의 정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④ “한시정수”라 함은 일시적인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승인한 인력으로서 사용기간이 정하여진 인력을 말한다.

○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(정수책정의 요구) ①사용부서는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정원외인력에 한하여 새로운 정수책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외인력책정요청서를 정수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 조(정수책정) ①정원외인력의 정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책정한다. 다만, 사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없이 사무기술전문가내 분야별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정수관리부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원외인력정수책정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채용목적·인원·기간 등의 적정여부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③사용부서는 정수관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수책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○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(부서별 임무)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정수관리부서 : 정원외인력의 정수관리
2. 인사부서 : 정원외인력의 채용·보수·퇴직관리 등 인사관리
3. 사용부서 : 정원외인력의 정수책정요청 및 사용 관리

○ 제7조의 “공사” 를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 로 한다.

○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 조(정수관리) 정수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외인력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.

1. 정원외인력의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
2. 인력진단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때
3. 채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

○ 별표1을 첨부와 같이 한다.

○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한다.

○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.

○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수) 제7조 관련 별표1의 사무기술전문가 중 한시정수 16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해당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1.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  2. 정원외인력정수의 조정 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수를 폐지한 경우
  3. 경영상의 이유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분야의 정수를 폐지한 경우

## 정 원 외 인 력 의 정 수 표

### 1. 총정원의 인력 정수

계	임대주택관리직원				고객지원 상 담 원	건물유지 관 리 원	사 무 관 리 원	사무기술 전 문 가
	소 계	사무원	기술원	복수직				
414	371	193	71	107	11	9	3	20

※ 사무관리원(특정사무 지원) 3명 : 비서 1명, 홍보 2명

### 2. 본부 정원의 인력 정수

부 서 명	계	임대주택 관리직원	고객지원 상 담 원	건물유지 관 리 원	사무관리원	사무기술 전 문 가
계	414	371	11	9	3	20
기획경영본부	21			9	3	9
주거복지본부	378	371	6			1
도시재생본부	2					2
공공개발사업본부	10		5			5
택지사업본부	1					1
건설안전사업본부	2					2
SH도시연구원						
SH교육원						
감 사						

### 3. 사무기술전문가 정수

계	속기사	재정 관리	공 공 디벨로퍼	홍보	해외 사업	주거 복지	시유지 관 리	마케팅	유통	식물	설계	에너지
20	1	1	3	1	4	1	2	3	1	1	1	1

※ 한시정수(16명) : 속기사(1), 재정관리(1), 공공디벨로퍼(2), 홍보(1), 해외사업(4), 주거복지(1), 시유지관리(2), 유통(1), 식물(1), 설계(1), 에너지(1)

#### 4. 임대주택관리직원 정수

부서명	합계	계				사무원				기술원				복수직				
	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계약직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소계	7급갑	7급을	8급갑 ~ 9급을	계약직
합계	371	10	16	338	7	193	10	16	167	71	0	0	71	107	0	0	100	7
강남 주거복지센터	35	1	2	31	1	23	1	2	20	7	0	0	7	5	0	0	4	1
송파 주거복지센터	26	1	1	24	0	14	1	1	12	5	0	0	5	7	0	0	7	0
강서 주거복지센터	41	1	2	38	0	22	1	2	19	8	0	0	8	11	0	0	11	0
관악 주거복지센터	29	1	1	26	1	16	1	1	14	6	0	0	6	7	0	0	6	1
노원 주거복지센터	48	1	2	44	1	23	1	2	20	9	0	0	9	16	0	0	15	1
동대문 주거복지센터	31	1	1	28	1	16	1	1	14	6	0	0	6	9	0	0	8	1
성동 주거복지센터	24	1	1	20	2	13	1	1	11	6	0	0	6	5	0	0	3	2
마포 주거복지센터	24	1	2	21	0	12	1	2	9	6	0	0	6	6	0	0	6	0
은평 주거복지센터	35	0	2	33	0	17	0	2	15	5	0	0	5	13	0	0	13	0
성북 주거복지센터	31	1	1	28	1	11	1	1	9	5	0	0	5	15	0	0	14	1
양천 주거복지센터	47	1	1	45	0	26	1	1	24	8	0	0	8	13	0	0	13	0



<별지 제2호 서식(제5조 관련)> <삭 제>

<별지 제3호 서식(제5조 관련)> <삭 제>